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6. 28 선고 2023가단10070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A 주식회사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중현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우

변 론 종 결 2023. 5. 24.

판 결 선 고 2023. 6. 2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소외 D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같은 목록 기재 근저당권에 관하여 2022. 3. 2. 체결된 계약양도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3. 2. 접수 제13926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소외 D(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차1458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하여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 상당 채권을, ② 부산지방법원 2018가소24554호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기하여 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을 판결 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B는 소외인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소29452호 대여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기하여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을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소외인은 소외 E이 소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 19. 접수 제4237호로 채권최고액 220,000,000원, 채무자 E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그 후 소외인은 2022. 3. 2.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같은 법원 2022. 3. 2. 접수 제13926호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갑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소외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피고 앞으로 이전하여 준 것은 원고들의 채권확보 및 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양도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이전등기절차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실제로는 주식회사 F이 권리자이므로 처음부터 소외인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갑4호증, 을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주식회사 F이 권리자일 뿐 소외인이 그의 책임재산으로 취득한 사실은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소외인의 책임재산임을 전제로 한 사해행위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는 결국 이유 없다.

① 소외인은 2017년 이후 원고들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채권액이 고액인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취득할 만한 권원이 있었던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소외인이 2022. 1. 19. 근저당권자가 되었다가 불과 2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인 2022. 3. 2.자로 이를 이전한 것은 잠시 근저당권자로서 명의를 빌려 주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② 주식회사 F은 부산 중구 G 소재 건물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 측에 200,000,000원 상당을 소외인을 통하여 대여한 바가 있었는데, 위 돈을 지급받은 신탁회사는 이를 그대로 소외인에게 반환하였고, 200,000,000원을 반환받은 소외인이 이를 주식회사 F에 송금하자 결국 주식회사 F이 매수인 측에 송금(매수인 측의 대출이자 상환에 사용)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마쳐졌는바, 결국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주식회사 F 측에서 출자한 금원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주식회사 F이 G 소재 건물 등 재산을 은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소외인의 자산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③ 당시 주식회사 F이 대여한 자금은 피고의 자녀인 H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것인데, 주식회사 F의 대표자인 I의 아들이 피고이다. 즉 소외인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원인이 된 금전의 대여는 소외인의 자금이 아닌 피고 측의 자금으로 집행된 것에 불과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현기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부산광역시 기장군 J

종교용지 410㎡

2. 부산광역시 기장군 K

답 562㎡

3. 부산광역시 기장군 L

종교용지 456㎡

4. 부산광역시 기장군 J, L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M

블록조 스텔지붕 단층

용왕당 1.5㎡

5. 부산광역시 기장군 J, L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M

목조 한식기와지붕 단층

법당

65.70㎡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단층

요사채

70.20㎡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단층

변소

4.48㎡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단층

요사채

37.80㎡

조적조 스라브지붕 단층

산신각

16.56㎡

- 이 상 -

<근저당권의 표시>

위 부동산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22. 1. 19. 접수 제4237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금22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